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0 선고 2020가단51022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A의 소송수계인 경기신용보증재
단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
담당변호사 배은서

피 고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
담당변호사 손병기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
변 론 종 결 2023. 6. 8.
판 결 선 고 2023. 8. 10.

주 문

1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A 사이에 2019. 3. 2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. 3. 22. 접수 제11299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

1) 원고는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A이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.

순번	보증채권자	신용보증일자	보증번호	보증원금	보증기한
1	주식회사 C	2015-04-08	D	20,000,000원 보증비율 : 100%	2020-04-08
2	주식회사 E	2018-10-16	F	20,000,000원 보증비율 : 100%	2023-10-16

2) A은 2019. 6. 11., 2019. 11. 19. 각 원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가 아래와 같이 각 대위변제일에 보증채권자에게 합계 24,149,862원을 대위변제하고, 85,270원을 회수하였다.

보증채권자	대위변제일	대위변제금(원)	회수금액(원)	대위변제잔액(원)
주식회사 C	2019-11-08	4,066,870	85,270	3,981,600
주식회사 E	2020-02-27	20,082,992	-	20,082,992
합계		24,149,862	85,270	24,064,592

3) 현재 대위변제 잔액 24,064,592원, 확정손해금은 23원, 채권보전비용 119,723원, 약정 지연손해금을 10%이다.

나.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A의 재산상태

1) A은 2019. 3. 21.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는 2019. 3. 2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‘채권최고액 52,000,000원, 채무자 A, 근저당권자 피고’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. 3. 22. 접수 제 112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2)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, G조합, H 주식회사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다. A의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이 사건 소송수계 등

A은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(2020개회11828)을 하였고,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. 6. 24.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를 소송수계하였다가,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21. 10. 20.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져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,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

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9. 3. 21.경에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,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시점이어서(A은 그 무렵 이미 H 주식회사, G조합, I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에게 다수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피고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)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,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2달 20일 정도 경과한 2019. 6. 11.,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2019. 11. 19. A의 각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됨으로써,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 및 사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채권자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[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5다47106(본소), 47113(병합), 47120(반소) 판결 등 참조].

2) 살피건대,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

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- 1) 피고는, 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- 2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,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(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),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피고는 A으로부터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A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.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진영

별지

목 록

1동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이천시 동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칠곡콘크리트조

면 적 : 55.73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경기도 이천시 대 509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509분의 27.58

- 끝 -

